

건강센터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부속 건강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센터는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위치) 센터는 성균관대학교 안에 둔다.

제4조(사업)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질병 조기발견과 진료 및 진료의 알선
2. 건강상담
3.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
4.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조 직

제5조(임원) 센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소 장 1인
2. 운영위원 약간명
3. 간 사 2인

제6조(소장) ① 소장은 본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.

제7조(간사) ① 간사는 본교 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센터의 일반사무를 관장한다.

제8조(직원) 센터에는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
- 의 사 : 약간명
- 약 사 : 약간명
- 간호사 : 약간명
- 기 사 : 약간명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9조(구성) ① 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그러나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기획조정처장, 학생처장,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자연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위촉한다.

제10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상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

2. 사업계획의 심의
3. 수입, 지출예산안의 심의와 결산
4.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

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2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기부금,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3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의 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

1. 「학생공상처리내규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‘보건진료소’를 각각 ‘건강센터’로 한다.